

당헌 목차

제 1 장 총칙

제 2 장 당원

제 3 장 당기구

제 4 장 원내기구

제 5 장 대통령후보자 선출

제 6 장 공직후보자 추천기구

제 7 장 공직후보자 추천

제 8 장 회계

제 9 장 당헌 개정

제 10 장 보칙

제 11 장 부칙

태건당 당헌

[2024년 2월 20일 제정]

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당의 명칭은 태건당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태건당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존중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면서 미래 가치를 더 중시한다. 장차 대한민국은 신의 종주국과 세계 종주국의 지위를 얻게 되면서 인류의 수도가 된다. 대한민국이 초강대국이 되고 경제대국, 관광대국, 인구대국, 관광대국, 수출대국, 영토대국이 되어 세계를 통치하고 국민 각자의 행복이 최고가 되고 잘사는 것을 정당의 중심 목표로 삼는다.

제 3 조 (구성)

- 1) 태건당은 중앙당, 시·도당으로 구성한다.
- 2) 중앙당은 수도에, 시·도당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제2장 당원

제 4 조(요건)

- 1) 태건당의 이념과 정강 정책에 동의하고 정당법에서의 기준에 맞는 자는 당원이 될 수 있다.
- 2) 당원이 탈당할 때는 소속 시·도당 또는 중앙당에 별지 제2호 서식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명 처분을 받은 자는 재입당을 불허한다.
- 4) 입당, 탈당, 제명의 요건과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제 5 조 (권리 및 의무)

1.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선거권
 - 2) 피선거권

- 3)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4) 공직 후보자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5)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6) 당원협의회 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 7) 당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2. 당원은 당헌과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1) 당헌, 당규를 지킬 의무
- 2) 결정된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 3) 당무 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 4)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 5) 당이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윤리교육 포함)을 받을 의무

3.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당원으로서 권리를 제한받거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각종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임명 또는 추천할 때 지역, 여성 당원 50%로 하고 대표성이 보장되도록 참여기회를 다음 각호에 맞추어 구성한다.

- 1) 각종 의결기관의 선임 대의원 및 선거인단 구성시 여성을 50%로 한다.
- 2) 각종 선거(지역구)의 후보자 추천시 여성을 50%로 한다.
- 3) 주요 당직 및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을 50%로 한다.

제 6 조 (당원소환제)

1) 당원은 법령 및 당헌, 당규,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당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해당 행위를 한, 당 대표를 대상으로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당원소환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 조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 8 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

1)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 2) 당정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를 한다.

제 9 조 (당비 납부 의무와 당원의 권리)

1. 당비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당원은 당헌 또는 당규에 정한 각종 당직의 선임 및 공직 후보자 추천과 그 과정에 있어서 우선 배려되어야 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원에 대해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당규에 규정된 당비 납부기준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당직자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자의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4. 당비의 납부 기준금액과 납부 절차, 당비 납부 의무와 당원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1) 당원은 당의 이념과 당헌 당규를 준수하고 당의 정책에 협조한다.
- 2)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하여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명한다.

제3장 당기구

제 1 절 전당대회

제 10 조 (구성)

1. 전당대회는 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정수는 당규로 정한다.

- 1) 당 대표
- 2) 최고 의원(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포함)
- 3) 당 소속 시·도지사
- 4) 당 소속 국회의원
- 5)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6) 중앙위원회 주요 당직자
- 7)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 8)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 9) 당 소속 시·도의회 의원
- 10)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제 11 조 (기능)

1. 전당대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 1) 당 강령의 채택과 개정
 - 2) 당헌의 채택 및 개정
 - 3) 당의 해산과 합당에 관한 사항
 - 4) 대통령 후보자의 지명
 - 5)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2.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할 때는 제1항 각호에 관한 의결은 제10조 1항 각호의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

제 12 조 (소집)

1. 정기 전당대회는 3년마다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임시전당대회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당대회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3. 전당대회 소집은 전당대회 의장이 전당대회 개최일 전 5일까지 이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4. 전당대회의 의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3 조 (임원)

1. 전당대회에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둔다.
2. 전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제10조 1항 각호의 대의원에서 선출 한다.

제 14 조 (의결정족수)

전당대회는 이 당헌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조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1.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하기 위하여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선거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 절 당 대표

제 16 조 (지위와 권한)

1. 당 대표는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괄한다.
2. 당 대표는 당내 소통 확대 및 원활한 당무 수행을 위하여 정례적으로 다음 각호의 회의를 개최한다.
 - 1) 중앙당 주요 당직자, 각종 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확대 당직자회의
 - 2) 당 대표 등 중앙당 주요 당직자가 참석하는 원외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회의
3. 당 대표는 원활한 당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당 대표는 당직자 인사에 관하여 임면권 및 추천권을 가진다.
5. 당 대표의 권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7 조 (당 대표의 선출)

1. 당 대표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이 실시한 선거에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여 전당대회에서 지명한다. 다만, 최다 득표한 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 한다.
2.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 기간 중 중도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의 투표를 하지 않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당 대표로 지명할 수 있다.
3. 당 대표의 궐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당 대표 선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 1) 궐위 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을 승계한다. 다만, 원내대표 유고 시 새로운 원내대표 선출 시까지 최고 위원 선거를 하여 득표순으로 승계한다.
 - 2) 궐위 된 당 대표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궐위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시 선출된 당 대표를 지명하여야 한다.
4. 제3항 가 및 나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5. 결선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중 1인의 후보자 사퇴, 사망 등의 사유로 결선투표 대상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잔존 1인을 당 대표 당선인으로

한다.

제 18 조 (임기)

당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19 조 (권한대행)

당 대표가 궐위 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권한을 대행할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 연장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 20 조 (직무대행)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절 당무 집행 기구

제 21 조 (구성)

당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사무처, 시·도당에 시·도당사무처를 둔다.

제 22 조 (당무 집행 기구)

1. 중앙사무국에 당의 정책·조직·홍보·인사·재정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이를 보좌하는 정책본부장, 조직본부장, 홍보본부장(부총장급)을 두고, 당 대표 직속으로 대변인을 두며, 세부 업무 범위는 당규로 정한다.
2. 사무총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책본부장, 조직본부장, 홍보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중앙사무국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둘 수 있다.

제 23 조 (임명)

사무총장, 정책본부장, 조직본부장, 홍보본부장, 대변인은 당 대표가 임명한다.

제 24 조 (사무처 당직자 인사위원회)

1. 당무 집행 기구,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인사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무처 당직자 인사위원회를 둔다.
2. 사무처 당직자는 사무처 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한다.

3. 사무처 당직자 인사위원회의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부서별 기능, 복무 및 사무처 당직자 임면 절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 절 최고위원회의

제 25 조 (구성)

1. 당무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기관으로서 당무를 통합 조정하기 위하여 최고위원회의를 둔다.

2. 최고위원회의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 대표

2) 원내대표

3)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하는 최고위원 1인

3. 최고위원회의의 의장은 당 대표로 한다.

제 26 조 (기능)

최고위원회의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국위원회와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요구

2. 의원총회 소집 요구

3. 사무총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협의

4. 공천관리위원장 등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당직자 임명에 대한 의결

5. 국회의원 후보자 등 공직 후보자의 의결

6. 당 예산 및 결산과 회계감사에 대한 의결

7. 의원총회가 회부 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8. 기타 당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처리

9. 기타 주요 당무에 관한 심의 의결

제 27 조 (소집 및 의사)

1. 최고위원회의는 주 1회 의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최고위원회의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8 조 (의결정족수)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제43조를 준용한다. 다만,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당 대표가 결정권을 가진다.

제 5 절 윤리위원회

제 29 조 (구성)

1. 당의 윤리 의식 강화와 기강 유지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둔다.
2. 윤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원 중에서 임명한다.
3. 윤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4. 윤리위원회는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의 경우 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윤리관을 둘 수 있으며, 윤리관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명한다.
5. 윤리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0 조 (기능)

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윤리강령, 윤리 규칙 등의 심의 및 제 개정
2. 당무감사위원회에 중대한 윤리 사안에 관한 조사 요구
3. 당무감사위원회가 종결한 사안에 대한 재심사 요구
4. 당무감사위원회가 재심사를 거부하거나 당무감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안건 직접 회부 및 심의·의결
5. 당헌 당규 및 윤리 규칙을 위반하거나 기타 비위가 있는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 심의 의결
6.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과 당원 외 인사와 각급 당 기구에 대한 표창의 심의 의결
7. 기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인사 사항

제 6 절 당무감사위원회

제 31 조 (구성)

1. 당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당무감사위원회를 둔다.

2. 당무감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당원 중에서 임명한다.

3. 당무감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4. 당무감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5. 당무감사위원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2 조 (기능)

당무감사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소속 국회의원 및 광역 및 기초단체장, 주요 당직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당내 기구 임직원의 당헌 당규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비리, 비위 등 부정 사건 조사 및 자료관리

2. 조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의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3. 최고위원회의 또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시·도당윤리위원회가 요구한 중대한 윤리 사안에 대한 조사

4. 시·도당 당무감사

5. 중앙당 및 시·도당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직무감찰

6. 기타 당무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조사

제 7 절 시·도당

제 33 조 (시·도당 대의원회 구성)

1. 시·도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시·도당 대의원회를 둔다.

1) 시·도당 대표자

2) 당 소속 시·도지사

3) 관할 당 소속 국회의원

4)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5) 시·도당사무처 당직자

6) 당 소속 시·도 및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제 34 조 (시·도당 대의원회 기능)

1. 시·도당 대의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전당대회 대의원의 선출

2) 공직 후보자(시·도지사 후보자)의 지명

- 3) 중앙당에 대한 각종 건의
- 4) 기타 시·도당의 주요 당무에 관한 사항의 의결 및 승인
- 5) 시·도당 대표자 선출

2. 시·도당 대의원회의 수임 기관으로서 시·도당 운영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 1) 시·도당 대표자 및 부대표
- 2) 당 소속 시·도지사
- 3) 당 소속 국회의원
- 4)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5) 당 소속 자치구·시·군의 장
- 6) 시·도당 부장급 이상 사무처 당직자
- 7)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 의원
- 8) 당 소속 시·도의회 의장 및 부의장

3. 시·도당 대의원회 및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5 조 (시·도당 대표자)

1. 시·도당에 대표자 1인과 수석부대표 1인을 둔다.
2. 대표자는 시·도당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기 전당대회가 개최되는 해에는 정기 전당대회 이전까지 선출하여야 한다.
3. 시·도당 부대표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자가 임명한다.
4. 시·도당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6 조 (당원협의회)

1. 시·도당 아래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당원들의 자발적인 지역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를 구성한다.
2. 당원협의회는 원활한 운영과 지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장을 둔다.
3. 당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들을 소집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다.
4. 당원협의회는 운영·구성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원내 기구

제 8 절 의원총회

제 37 조 (구성)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총회를 둔다.

제 38 조 (의원의 의무와 지위)

1.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이 부여한 직무와 선서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 39 조 (기능)

1. 의원총회는 의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2. 의원총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 1) 원내대표의 선출
 - 2)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 3) 국회 대책 및 원내 전략의 결정
 - 4) 국가 주요 정책 및 주요 법안의 심의
 - 5) 국회 제출 법안 및 의안 중 주요 쟁점 사안의 심의·의결
 - 6)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
 - 7)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 8). 기타 당헌 또는 당규가 정하는 사항과 최고위원회의가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
3. 국회의장·부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선출 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0 조 (의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경우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회의를 주재한다.

1. 원내수석부대표
2. 원내부대표 중 1인

제 41조 (소집)

1. 의원총회는 월 2회 정기적으로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원총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2. 의원총회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이 있을 때 원내대표가 소집하여야 한다.

3. 의장은 소집 목적과 구체적인 안건을 명시하여 최소한 48시간 전에 소속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의장은 소속 의원들의 요청시 원내 상황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제 42 조 (회의)

1.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장은 의원총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3. 의원은 10인 이상의 동의로 안건을 추가하거나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4. 안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관련분야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토론, 패널토론, 청문회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 43 조 (의결정족수)

1. 의원총회의 의결은 과반수 또는 과반수를 원천으로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직접, 비밀 투표로 의결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의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하되, 야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특별 안건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당론 변경, 헌법개정,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결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회의체에서 당연히 제척된다.

5. 당헌상 달리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항을 준용한다.

제 44 조 (양심에 따른 투표의 자유)

1. 의원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국회에서 투표할 자유를 가진다.

2. 제43조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당론에 대하여 의원이 국회에서 그와는 반대되는 투표를 했을 경우 의원총회는 의결로서 그에 대한 소명을 들

을 수 있다.

3. 생명, 윤리, 종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당론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 9 절 원내대표

제 45 조 (지위)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

제 46 조 (선출 및 임기)

1.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선출 방법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2. 원내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47 조 (권한)

1. 원내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 1) 의원총회 및 원내 대책위원회의 주재
- 2)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등에 대한 배정
- 3) 원내 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의 추천과 임명
- 4) 정책본부 부의장, 정책 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
- 5) 기타 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2. 제1항 제2호의 권한 행사에는 정책본부장의 의견을 들어 배정한다.

제 48 조 (원내부대표 등)

1. 원내대표를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수석부대표를 포함한 2인 이내의 원내부대표를 둔다.

2. 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의 추천과 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3.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9 조 (원내 대책위원회)

1. 국회 활동에 관한 당의 주요 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원내 대책위원회를 둔다.

2. 원내 대책위원회는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원내 수석부 대표 및 원내 부대표,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위

원장으로 구성한다.

3. 원내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한다.

4.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48조(원내부대표 등)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원회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원내 대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내기획실과 필요부서를 둔다.

6. 원내 대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 절 정책위원회

제 50 조 (구성)

1. 당 정책의 입안, 심의 및 현안 대처 기관으로서 의원총회 산하에 정책위원회를 둔다.

2. 정책위원회에 정책위원회 의장과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책조정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을 둘 수 있다.

3. 정책위원회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4. 정책위원회에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부서를 둔다.

5.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고위원회의 또는 원내 대책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특별기구를 둘 수 있다.

제 51 조 (기능)

1. 정책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가진다.

1) 당 정책의 연구·심의 및 입안

2) 정부 정책에 대한 검토 및 대안 제시

3) 법률안, 대통령령안, 예산안, 국민 생활 또는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안에 대한 당·정 정책협의 또는 검토 업무

4) 의원입법안의 연구 및 심의

5) 당 정책에 관한 자문 사항의 심의

6) 주요 사회단체의 정책현안 수렴 및 정책 연계 활동 등 당내·외 여론 수렴을 통한 정책 개발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대외홍보

2. 정책위원회에서 심의된 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원내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정책위원회 의장은 제1항 제3호의 결과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52 조 (정책위원회 의장 등)

1.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정책위원회의 주재
 - 2) 당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
 - 3) 당정 협의 업무 총괄·조정
 - 4) 정책위원회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추천
3.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 임명한다. 의원총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정책위원회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책 조정위원회간 정책조정을 위하여 약간인의 부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의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6. 정책조정위원장은 정책위원회 의장의 추천으로 원내대표가 임명한다.
7. 정책위원회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장 (대통령 후보자 선출)

제 53 조 (후보자 선출)

1. 대통령 후보자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한다.
2. 대통령 후보자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인단 유효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로서 한다. 다만, 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1인이거나 선거 기간 중에 중도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자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후보자투표를 하지 아니하고 전당대회에서 그 후보자를 대통령 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3.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한다.
4. 제2항의 본문에 의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전당대회에서 결선투표를 통해 최다 득표자중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5. 제4항의 경우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재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후보자로 지명한다.

6.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4 조 (대통령 선거인단 구성 등)

1.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인단은 유권자 수의 1% 이상으로 하고 다음 각호로 구성한다.

- 1) 전당대회 대의원 선거인
- 2) 전당대회 대의원이 아닌 당원 선거인

2. 대통령 선거인단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5 조 (후보자의 자격)

1.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고 후보자등록일 현재 당적을 보유하여야 한다.

2.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제 56 조 (후보자의 선출 시기)

대통령 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선거일 전 12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된 대통령 후보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7 조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제)

1. 대통령 선거 240일 전부터 출마 희망자를 위한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제를 운영한다.

2. 대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상임고문으로 위촉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당무 전반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 대선 예비 후보자의 등록 요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8 조 (후보자의 지위)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제6장 공직 후보자 추천 기구

제 59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1.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은 당외인사로 한다. 다만, 최고위원은 지역구 공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

3. 공천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4.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90일 전까지 구성한다.

5. 공천관리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며, 최고위원회는 공직 후보자 추천에 대한 재의 의결권을 가진다.

6. 제5항의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 후보자 추천안을 재 의결한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7.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
- 2)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 3) 우선추천지역 선정

8. 공천관리위원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9. 공천관리위원회는 필요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평가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후보자를 압축 또는 추천할 수 있다. 평가시스템의 세부적인 사항은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제 60 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위원회)

1.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4.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 90일 전까지 구성한다.

5.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며,

최고위원회의는 공직 후보자 추천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가진다.

6. 제5항의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공천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 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의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7.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대한 공모
- 2) 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8.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함

제 61 조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 기구)

1.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각각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와 시·도당에 비례대표 공직 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는 당내 인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포함)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당내 인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최고위원은 공천관리위원을 겸할 수 없다.

3.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포함)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며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도당 위원장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

4.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를 포함)가 심사한 사항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한다. 다만, 각각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최고위원회의는 재의요구권을 가진다.

5. 제4항의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직 후보자 추천안을 재의결한 경우 최고위원회의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6.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 다만, 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제1호, 제2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당 소속 각종 공직 후보자에 대한 공모
 - 2) 당 소속 각종 공직 후보자에 대한 심사 또는 선정
 - 3) 우선추천지역 선정
7.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공직 후보자의 추천

제 62 조 (후보자 추천)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은 경선 등을 통한 추천을 원칙으로 하며 당헌 제6장의 「공직 후보자 추천 기구」가 수행 한다.

제 63 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1.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에서 후보자 추천한다.
2.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1) 당내경선
 - 2) 단수 후보자 추천
 - 3) 우선 추천제도를 통한 후보자 추천
3. 공천관리위원회는 추천안 마련을 위하여 당무감사위원회, 윤리위원회, 등 당 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당 기구는 지체하지 않고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2항 제1호의 당내경선은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제2항 제2호의 단수후보자 추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공천 신청자가 1인 경우
 - 2) 복수의 후보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하여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
 - 3) 복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
6.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4 조 (국회의원선거 우선 추천 제도)

1.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는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2. 공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

다.

- 1)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거나 유권자 대비 책임당원 비율이 현저히 낮은 지역
- 2) 반복적인 국회의원선거 패배로 당세가 현저히 약화 된 지역
- 3) 공천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공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3. 우선추천지역의 후보자는 정치적 소수자 및 당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로 한다.
4. 우선 추천제도를 통한 공직 후보자 추천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 전체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5. 우선추천지역 선정 기준 등 우선 추천제도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5 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1.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라 한다)의 추천과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한다.
2.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은 성별, 연령, 지역, 직업 등의 국민 대표성 및 전문성, 당 기여도 등을 고려하고, 여성을 50% 이상 포함한다.
3. 비례대표 공천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신청자의 심사에서 배척한다.
4.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위원은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을 수 없다.
5. 비례대표 공천위원회는 공천 신청자에 대해 부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6. 공천 신청자의 부적격 기준 등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6 조 (시·도지사 후보자의 추천)

1. 시·도지사 후보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경선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도지사 후보자는 시·도지사 선거인단의 투표로 선출하고, 이경우 시·도지사 선거인단은 당해 시·도의 당원을 포함하여 유권자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후보자의 선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출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시·도지사 후보자의 선출 및 추천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7 조 (기타 공직 후보자의 추천)

1.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

2. 지역구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는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와 경선 등을 통해 선정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3. 비례대표 시·도의회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는 해당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시·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심사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 대표가 추천한다. 다만,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후보에 여성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4.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 방식 및 후보자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할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후보자 선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면접 또는 여론조사를 통하여 단수 또는 압축된 후보자를 추천한다.

6.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압축된 복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한다. 다만, 경선은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다.

7. 자치구·시·군의 장, 시·도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보자 선출 및 추천 등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8 조 (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

1. 제6장 「공직 후보자 추천 기구」, 제63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의 추

천), 제66조(시·도지사 후보자의 추천), 제67조(기타 공직 후보자의 추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보궐선거를 위한 공직 후보자는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시행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회계

제 69 조 (회계연도)

당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 70 조 (당의 재정과 운영)

당의 재정은 당비와 특별당비, 후원금, 기탁금으로 한다.

제 71 조 (예산결산위원회)

1. 당 운영자금 감사를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2. 예산결산위원회는 정책본부장, 조직본부장, 재정위원장, 중앙당 총무국장, 공인회계사 총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정책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당 총무국장을 간사로 한다.
3. 예산결산위원회는 회계연도의 분기마다 당내 및 당 외 각 1회의 회계감사를 하고, 회계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 최고위원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원에게 공개하도록 한다.
4.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제9장 당헌 개정

제 72 조 (개정의 발의)

당헌의 개정 발의는 당원협의회의 의결 또는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한다.

제 73 조 (의결 절차)

1. 당헌 개정안은 당 대표가 전당대회 또는 당원협의회 개최일 전 3일까지 공고한다.
2. 당헌 개정은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또는 당원협의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당원협의회가 당헌 개정을 의결한 경우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74 조 (개정 당헌의 공포)

당원협의회 또는 전당대회를 통해 당헌이 개정될 때는 당 대표는 바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 75 조 (합당과 해산 및 청산)

1.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당대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2. 당이 해산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는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원협의회가 설치한 수입 기구가 청산위원회가 되어 이를 청산한다.
3. 합당과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6 조 (법정 부채과 인장의 인계)

1. 중앙당과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시·도당 대표자 또는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 부채과 정당 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2. 법정 부채과 인장의 종류, 인계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7 조 (선거 대책기구의 지위 등)

1. 대통령 후보자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대책기구를 구성한다.
2. 대통령 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및 선거재정 등 선거업무 전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진다.
3. 대통령 선거 대책기구의 장은 대통령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을 조정한다.
4. 선거 대책기구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78 조 (비상대책위원회)

1. 다음 각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제1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바로 최고위원회의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 1)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
2.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비상대책위원장
 - 2) 제77조 제5항에 의해 임명된 비상대책위원
 - 3) 원내대표
 - 4) 정책위원회 의장

3.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
4.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은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5.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 임명 즉시 설치가 완료된다.
6.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 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및 당 대표 직무대행 포함)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며 당헌 및 당규상 '당 대표' 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최고위원' 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최고위원회의' 는 '비상대책위원회'로 본다.
7.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한 경우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8. 비상대책위원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 79 조 (후보자 예비 심사(컷오프)제도 도입)

당 대통령 후보자, 당 대표, 당 공직 후보자 선출 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후보자 예비 심사(컷오프)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 80 조 (비대면 투표 및 의결 특례)

각급 회의체 의장은 당이 실시하는 모든 선거의 투표와 당의 모든 대의기관 및 각급 회의 의결에 관해 다음 각호의 방식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급 윤리위원회의 의결은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없다.

1. ARS 투표
2. 모바일 투표
3.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한 의결
4. 기타 준하는 방식
5. 실시간 영상송출
6. 순차적 전화 통화 방식

7.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
8.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

제 81 조 (공인전자서명으로 결의시 의결권 행사)

제80조 3항 전자서명을 통한 결의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의결한다.

1.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항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1)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2)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 관리하고 있을 것
- 3) 전자서명을 한 후, 해당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4) 전자서명을 한 후, 해당 전자문서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2.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한 경우, 회의 소집 통지 때 아래 사항을 기재한다.

- 1)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한다.
- 2)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 3) 당원의 전자투표 행사 기간(회의 10일전 오전 09시부터 각 회의 전일 오후 5:00까지. 공휴일, 일요일도 가능)
- 4)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 전자서명을 통하여 당원임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제출하여 해당 의결 사항과 참고 자료를 검토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 투표행사 양식에 의안별로 찬반 의사표시를 하여 미리 통지한 인터넷 주소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되고, 전자투표는 각 회의 전날까지 전자투표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82 조 (시·도당 창당 승인의 취소)

시·도당 창당 승인의 취소는 최고위원회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제 83 조(승인, 인준 거부)

1.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시, 도당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아니 하거나 시, 도당 대표자의 인준을 아니 할 수 있다.

- 1) 법정 당원 수 1,000인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2) 시, 도당대의원대회 과정에 정당법 등 관련법이나 당헌, 당규에 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3) 시, 도당대의원대회 과정에 중앙당의 지시, 지침 등을 어긴 경우
- 4) 준비위원장과 시, 도당 대표자 후보자의 자격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해당 행위가 있는 경우

- 5) 당무감사위원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제1항 각호의 경우는 중앙당 사무처의 진상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준비위원장과 시. 도당 대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당무감사위원회가 시. 도당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아니 하거나 시. 도당 대표자의 인준을 아니 한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준비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되, 필요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 도당은 사고 당부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시. 도당대의원대회 승인 후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승인 취소 사유가 있다고 당무감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당무감사위원회 의결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 84 조(이의신청)

1.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시. 도당대의원대회 종료 후 7일 이내에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중앙당 사무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1) 시. 도당대의원대회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2) 대의원 자격이 없는 자가 표결 참가하여 의결에 영향을 준 경우
 - 3) 시. 도당대의원대회의 의결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무총장은 이를 즉시 당무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총장은 그 처리 방법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3. 당무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정하되 사실확인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하게 할 수 있다.
4. 사무총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당무감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해당 시. 도당 대표자와 신청인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장 부칙

부 칙 (2024. 02. 20)

제 1 조 (시행일)

이 당헌은 2024년 2월 20일 개최한 태건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